

산학협력단 용역계약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관리 지침」에 따라 본교 연구자의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용역 발주 및 계약의 절차와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업무에 소요되는 용역을 적정하고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학협력단회계의 연구비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 또는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축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소방법에 의한 감리·하자보수, 측량법에 의한 측량,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3. ‘일반용역’이라 함은 정보통신관련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시설물관리·청소·경비용역, 운송용역, 전시 및 행사대행용역, 광고 및 디자인용역, 장비 유지보수용역,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4. ‘용역계약’이란 각종 용역의 발주 및 계약에 따른 포괄적인 절차를 말한다.
5. ‘용역계약요구자’란 연구비 예산에서 용역을 계약 신청하는 자로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6. ‘계약사무담당자’라 함은 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용역발주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산학협력단 소속의 팀장을 말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을 계약사무담당자로 본다.

제4조(업무의 주관) 용역발주계약에 관한 업무는 산학협력단장이 주관한다.

제5조(용역의 중앙 구매)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중앙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연구사업에서 수행하는 500만원(부가가치세액 포함) 이상인 용역
2. 용역계약요구자가 중앙 구매를 요청한 경우
3. 계약의 성격상 중앙 구매가 필요한 경우

제 2 장 용역계약의 절차

제6조(용역계약요청) ①용역계약요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용역계약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용역계약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예산견적서 및 과업지시서(별지 제2호)와 함께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산견적서는 추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1개 업체 이상에서 받는 설계금액 견적서를 지칭한다.
2. 계약업체지정사유서(별지 제3호)는 복수의 업체가 공개경쟁입찰 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지침 제24조(수의계약)의 타당한 사유를 작성하여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용역계약요청은 용역의 가격조사·입찰집행·제조 및 수행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수요예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계약방법) 용역계약의 신청을 받은 계약사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구입방법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정 후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1. 경쟁입찰
2. 수의계약

제8조(예정가격 비치) ①계약사무담당자는 경쟁입찰에 부칠사항에 대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의 가격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사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협상에 의한 계약
2.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제9조(검수의뢰) 계약사무담당자는 계약 관련 서류를 용역계약 신청부서에 송부하여 용역계약의 검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0조(검수확인) 검수확인은 용역계약 신청부서가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금의 지급) 용역의 대금은 용역계약서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대금 등의 선급) 용역의 수행 등 그 성질상 대금을 선급하지 아니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금의 일부를 선급할 수 있다.

제 3 장 용역계약

제 1 절 통 칙

제13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사무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방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방이 사기, 기망, 금품수수, 담합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본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취소함은 물론 이후 본 산학협력단의 모든 계약업무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4조(계약사무의 위임) 산학협력단장은 용역계약에 관한 사무를 산학협력단 소속의 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용역발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사무담당자는 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서의 작성) ① 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계약사무담당자는 계약상대방(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과 정해진 서식에 의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보관하고 1부를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계약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고 용역계약 약정서(발주서)로 대체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2. 1주일 이내에 용역시행이 가능한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기명·날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 절 경쟁입찰계약

제17조(일반경쟁입찰의 원칙)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써 행하여야 한다.

제18조(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설비, 자재 등을 보유하거나 실적 있는 자가 아니어서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수 있다.

제19조(입찰대상자의 지명) 지명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실적과 신용 있는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3인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입찰공고 및 방법) ①입찰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대학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이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용역수행의 전문성·기술성을 중시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등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공고기간(법령 공고기간 40일)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계약사무담당자는 용역의 성격상 현장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고,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입찰은 입찰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자로서 참석을 제한하였을 때 또는 입찰자가 다수인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로 입찰자의 입회사실상 불가능한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본 산학협력단 직원(검수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④계약사무담당자는 필요한 때에 입찰참가자에게 입찰개시 24시간 전까지 사업자등록사본, 인감증명, 위임장(사용인감계), 시세 및 국세완납증명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입찰보증금) 계약사무담당자는 입찰개시 1시간 전까지 입찰자에게 입찰보증금을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국공채, 이행보증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 등이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낙찰자의 결정) ①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산학협력단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예정가격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이 경우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 최저가격의 하한 기타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 기준에 따라 본 산학협력단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기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감안하여 산학협력단장이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③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규격입찰 개찰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⑤제2항 1호의 경우에 예정가격 이하의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총 3회의 재입찰에 붙여도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공고입찰을 시행한다. 다만 납품기일이 촉박한 경우 등에 한하여는 위의 재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재입찰을 시행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재입찰에 의하여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다.

제23조(입찰보증금의 본 산학협력단 귀속) 계약사무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본 산학협력단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 3 절 수의계약

제24조(수의계약)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할 수 있다.

1. 용역의 생산자, 소유자 또는 제작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업체를 통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3.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해당 용역을 특정한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도록 지정한 경우
4. 천재지변·긴급행사·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5. 공모전 또는 이에 준하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용역이 선정된 경우
6. 공고하여 입찰에 부쳤으나 재공고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공고하여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7. 공고하여 입찰에 부쳤으나 현장설명 또는 입찰등록 시 1업체만 참여한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8.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그 낙찰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경우
9. 용역발주계약의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 이미 조달된 용역의 사업 추가 또는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을 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②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25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①계약사무담당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계약사무담당자가 제1항의 복수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계약사무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적가격이 추정가격의 범위 안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 4 절 계약이행의 담보

제26조(계약보증금) 계약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단서의 규정은 계약

보증금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차액보증금) 용역발주계약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가격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용역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소정의 차액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한 후 담보책임기간 중의 용역하자의 발생에 대비하여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 단서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지연배상금) 계약상대방이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0조(계약금 등의 보관) 제21조와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보증금은 산학협력단에서 보관한다. 다만, 현금이 아닌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계약사무담당자의 소속부서에 보관한다.

제31조(제보증금의 본 산학협력단 귀속) 계약사무담당자는 계약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보증금을 본 산학협력단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32조(지연배상금의 본 산학협력단 귀속) ①계약사무담당자는 계약상대방이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제29조의 지연배상금을 본 산학협력단에 귀속시켜야 한다.

②계약사무담당자는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의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9조의 지연배상금을 본 산학협력단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33조(준용)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교 용역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이 지침은 2016년 0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지침은 201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지침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